

가나의 자원개발법제

-광업법을 중심으로-

박 원 석 교수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I. 가나의 정치·경제 현황

아프리카 서부 해안에 위치한 가나는 1957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이래 잦은 쿠데타와 체제분괴 등으로 많은 혼란을 겪다 2000년 이후부터 새롭게 도약하고 있다.¹⁾ 2000년-2008년 동안 쿠푸어 대통령과 신애국당(NPP: New Patriotic Party)이 통치하였으나²⁾ 2008년 야당인 국민민주회의(NDC: National Democratic Congress)의 대통령 후보 밀스(John Atta Mills)가 당선하여 여야 정권교체를 달성하였다.

경제적으로는 풍부한 광물자원과 안정적인 정치적 환경,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경기부양정책 등을 바탕으로 2000년 이후 5-7%의 높은 경제성장을 보이고 있다. 주요 산업은 광업과 농업으로서 금, 다이아몬드, 망간 등의 광물자원과 카카오, 커피, 파인애플 등의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다. 가나의 금 생산량은 아프리카에서 남아공에 이어 2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카카오는 세계 1위 국가이다.

가나의 주요 수출상품은 코코아와 금으로 2009년을 기준으로 각각 전체 수출의 30.2%, 43.8%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금은 2006년에 약

1) 가나라는 국호는 9-10세기 아프리카에서 융성했던 고대 가나제국의 명칭에서 유래하였다. 독립 전까지는 "Gold Coast"라고 불리었다. KIEP, "아프리카 주요국 경제현황 및 중점 협력분야", 2010.10. p 39.

2) 쿠푸어 대통령에 대해선 민주주의 정착 및 경제발전을 성공적으로 추진했다는 긍정적 평가도 있다. 정치적으로는 대통령 3선 금지, 국민 직접선거제 도입 등을 통해 민주주의를 정착시켰고, 경제적으로는 외국인투자 촉진, 기업환경 개선 등으로 시장경제체제 확립에 기여하였다. Id.

9억5천만 달러를 수출하였으나 2009년에는 18억 달러 이상 수출하고 있다. 방간은 매장량이 약 100만 톤으로 세계 11위이며 남부지역(Nsuta)에서 전량 생산되고 있다. 보크사이트는 약 1.2억 톤의 매장량을 보이고 있지만 인프라와 투자자금의 부족으로 44만 톤의 생산량에 그치고 있다. 운송 및 인프라 구축이 관건이다.

한국과는 1977년 국교를 수립하였으나 교역규모는 미미하다. 2009년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가나에 자동차, 합성수지, 기타 섬유제품 등을 1억 5,400만 달러 수출하였고, 산식물과 동제품, 금 등을 1,700만 달러 수입하였다.

II. 가나의 광업법

가나는 2006년 광업법(Minerals and Mining Act of 2006)을 개정하여 기존의 광업 관련법을 통합하였다. 2006년 이전의 광업 관련법은 다음과 같다:

- 헌법 (Constitution, 1993년)
- 부가가치세법 (PNDCL 122, 1985년)
- 다이아몬드법 (NRCD 32, 1972년)
- 다이아몬드 수정법 (PNDCL 159, 1993년)
- 금광산 보호 칙령 (Cap 149)
- 수은법 (PNDCL 217, 1989년)
- 광업법 (PNDCL 153, 1986년)
- 광업법 수정 (Act 1994, 1994년)
- 귀금속 공사법 (PNDCL 219, 1989년)
- 하천에 관한 칙령 (cap 226)
- 소규모 광업법 (PNDCL 218, 1989년)

2006년 광업법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광물의 소유권

(ownership of minerals and cadastral system)

○ 광물 소유권과 정부의 선매권

가나의 지상, 지하, 강, 하천, 수로, 배타적 경제수역, 영해와 대륙붕에 부존하는 자연 상태의 모든 광물³⁾은 가나 공화국 소유이며, 대통령에게 신탁된 것으로 본다.⁴⁾ 가나의 영토 및 관할권 내에 존재하는 천연자원에 대한 주권적 권리를 선언하고 있다. 대통령은 광물자원의 개발이나 이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 토지의 취득, 점유 또는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광업과 관련된 사항은 대통령에게 거의 모든 권한이 부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⁵⁾ 사실상 모든 광물이 광물권 신청대상이 되지만 이미 선점된 광물권이나 동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명시적으로 유보된 것을 제외된다.

광업부 장관은 광물권 취득 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를 유보할 수 있으나, 이는 대통령이 발행하는 행정문서(Executive Instrument), 즉 대통령령에 따른다.⁶⁾ 따라서 광업권 취득자는 특정의 토지에 특정 광물의 채굴이 금지되고 있는지, 또는 모든 광물의 채굴이 금지되고 있는가를 반드시 조사할 필요가 있다.

○ 광업권(mineral rights) 부여에 대한 장관의 권리

광업권은 예비탐사(reconnaissance licence), 본탐사(prospecting licence), 채광권(mining lease), 제한된 예비탐사권(restricted reconnaissance licence), 제한된 탐사권(restricted prospecting licence), 그리고 제한된 채광권(restricted mining lease)를 의미한다.

3) "Mineral" means a substance in solid or liquid form that occurs naturally in or on the earth, or on or under the seabed, formed by or subject to geological process including industrial minerals but does not include petroleum as defined in the Petroleum (Exploration and Production) Law, 1984 (P.N.D.C.L. 84) or water. 광업법 제111조(정의규정). 따라서 석유는 제외된다.

4) 광업법 제1조.

5) 광업법 제2조.

6) 광업법 제4조.

예비탐사허가(Reconnaissance Licence)

예비탐사허가는 ‘지질화학적 그리고 photo-geological 조사, 또는 기타 원격감지기법’을 통해 특정의 광물을 탐사하는 권리를 의미한다. 허가증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drilling, excavation, 기타 지하 굴착은 제외된다.

이 허가는 통상적으로 최대 1년간 부여되며, 허가권자가 장관에게 신청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1년 동안 갱신될 수 있다. 갱신신청은 만료 전 3개월 전에 행하여 져야 한다. 예비탐사구역은 최대 5000블락⁷⁾ 또는 1,050km²에 한정된다.

본탐사(Prospecting Licence)

본탐사는 허가지역 내 매장광물의 양 그리고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 지질학적, geophysical, 지질화학적 조사를 통한 특정 광물의 탐사권을 의미한다. 동 권리의 소유자는 예비탐사권자와는 달리 배타적 권리를 가지고, drilling, excavation, 기타 지하 굴착행위를 수행할 수 있다. 최초 허가기간은 최대 3년, 최대 탐사허용구역은 750 블락 또는 157.5km²에 한정된다. 그러나 최대 2회에 한하여, 각각 최대 3년의 기간 동안 갱신될 수 있다. 그러나 (갱신하는 경우) 허가권자는 최초 허가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최소 125블락 또는 26.3km² 이상에 대해 탐사권을 가지는 경우, 탐사허가구역 중 1/2이상을 포기하여야 한다.

채광권(mining lease)

채광권은 특정 광물을 채굴, 채광하는 권리를 의미한다. 동 권리는 탐사권 보유자나 허가 관련 광물이 허가구역에 상업적 수량으로 존재하며 수익성 채광이 가능하다고 광업부장관에게 입증하는 경우 부여된다. 허가기간은 최대 30년이며 추가적으로 30년 동안 갱신될 수 있다. 허가 구역은 각 증서당 최대 300블락 또는 63km²에 한정된다. 예비탐사나 탐사권자 외의 사람도 광물권의 대상이 아닌 지역에 대해 채광권을 신청할 수 있다.

제한된 예비탐사권(restricted reconnaissance licence), 제한된 탐사권(restricted prospecting licence), 그리고 제한된 채광권(restricted mining lease)은 산업용 광물⁸⁾을 탐사 또는 채광하는 경우에 발급된다. 제한된 예비탐사권은 보통 최대 1년간 부여되며 장관의 허가하에 최장 1년에 한해 수시로 갱신될 수 있다. 제한된 탐사권은 보통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허용되지만 최대 2회에 한해 각각 최장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갱신될 수 있다. 제한된 채광권은 보통 15년을 초과할 수 없고, 동 기간 동안 갱신될 수 있다. 건축자재 또는 산업용 광물 채광권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국민에만 부여된다. 가나 국민이 아닌 자가 산업용 광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US10mill. 이상의 투자를 하는 경우 허용된다.

7) 1블락은 21헥타르에 해당한다. 광업법 제111조(정의규정).

8) “산업용 광물(Industrial mineral)” basalt, clay, granite, gravel, gypsum, laterite, limestone, marble, rock, sand, sandstone, slate talc, salt and other minerals as the Minister may from time to time declare, by notice published in the Gazette, to be industrial minerals을 의미한다.

○ 광업권 부여권한

광업권은 대통령과 광물위원회(Minerals Commission)⁹⁾의 권고하에 광업부 장관이 부여한다. 장관은 광물권의 협상, 부여, 취소, 정지 또는 갱신 등 채광권 취득 전반에 대한 권리를 위임받고 있다. 장관이 광물권 부여 대상 토지를 결정하고, 신청을 거부하거나 신청 토지의 일부만을 부여하는 경우 그 이유를 서면으로 제시하여야 한다.¹⁰⁾

광업권의 부여나 허가와 관련된 계약은 의회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의회는 총 의원 중 2/3이상의 결의에 따라 특정의 거래나 계약을 면제할 수 있다.

○ 광물의 탐사 및 처분

“동 법에서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장관의 인가 없이 광물을 수출, 판매, 또는 달리 처분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광물의 처분에 대한 엄격한 제한을 부과하고 있다. 따라서 광물권 취득 시 수출, 판매, 처분에 대한 권리를 사전에 확보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러한 권리는 장관이 발급한 허가증서를 보유한 경우에 한함으로써 구두합의는 효력이 없음에 유의하여야 한다.¹¹⁾

탐사 및 처분증서는 광물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장관이 정한 형식이나 조건에 따라 발급되는데 양도될 수 없다. 그러나 다이아몬드 원석의 입, 수출은 해당 법령 및 규칙, 그리고 Kimberley Process Certification 계획¹²⁾에 따라야 한다.

○ 정부의 선매권(Government's right of pre-emption)

가나 정부(광업부 장관)는 자국의 영토 및 관할 수역 내에서 생산 또는 취득된 모든 광물에 대해 선매권을 가진다. 나아가 이러한 광물을 정련 또는 처리하여 생산된 부산물(derived products)에 대해서도

9) 광물위원회는 1993년 광물위원회법(Minerals Commission Act 1993)에 따라 설립되었다.

10) 광업법 제5조.

11) 광업법 제6조.

12) Kimberley Process는 2000년 12월 1일 UN총회 결의안(Resolution 55/56)에 따라 확립된 것이다. Kimberley Process Certificate은 증서발급요건에 따라 다이아몬드 원석의 선적을 확인하는 문서이다.

선매권을 가진다. 이러한 선매권은 대통령령에 따라 설립된 법정기구가 행사한다.

- 선매 가격 결정은 다음 조항에 의해 결정된다.
 - . 문서상의 합의에 의해 가격이 제시된 경우 명시된 가격에 따른다.
 - . 문서상의 합의에 의해 가격이 제시되지 않은 경우 광물과 생성물에 관한 선매권이 행사되는 광산이나 시설에서 광범위하게 제시되는 공지 시가를 적용한다.
 - . 이때, 실비로 추가되는 비용은 판매 가격에 포함될 수 있다.
- 선매권 방해 시 500,000.00 세디의 벌금형 또는 2년 미만의 징역에 처함과 동시에, 광물 가치의 두 배에 해당하는 비용을 책임지거나 본 법령에 의거하여 광물에 대해 가지는 권리를 박탈한다.

○ 예비 탐사, 탐사 채광시 정부의 지분 (권한)

- 해당 권리와 채권의 10%에 해당하는 지분을 가진다.
- 정부는 채광 임대권 소유자와 정부의 계약 조건에 따라 영리적 규모를 지니는 광상의 채광 작업에 대해 해당 권리와 채권을 20% 더 가질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지며, 연광과 관련된 경우 45%에 해당하는 지분을 가질 수 있는 선택권이 있다.

○ 채광권과 기타 인가

- 에너지 광업부의 인가나 임대 형태로서의 승인이 있어야 광산 및 광물에 대한 예비 탐사 및 탐사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 광업부 장관은 채광권의 협상 및 승인, 철회, 유예, 갱신권을 가진다. 광물위원회는 상기 권리에 대한 불허권을 30일 내에 행사할 수 있다.
- 채광권의 승인, 철회, 유예, 갱신에 대한 모든 신청서는 장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 채광권 또는 어떤 이익권도 장관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는 양도나 할당, 취급할 수 없다.

- 채광권 보유자는 광산 탐사국장의 서면 동의 없이는 광물 작업 과정 중 획득한 어떠한 광물도 이송하거나 파괴할 수 없다.
- 장관의 승인 없이 채광이나 여타 산업 목적으로 강이나 하천 또는 수로에서 물의 획득 및 방향 전환, 지수, 운반이 불가능하다.

2. 광업권(mineral rights)

o 광업권 취득 요건

광물이 소재하는 토지에 대한 광업행위는 예비탐사, 본탐사, 채광을 불문하고 엄격하게 제한된다. 동 법에 규정된 광업권을 발급받지 않은 경우 어떠한 광업행위도 금지된다. 광물이 소재하는 토지의 소유자조차 허가권이 없으면 광업행위를 할 수 없다. 동 법은 광업행위를 search, reconnaissance, prospecting, exploration or mining으로 분류하고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광업행위는 광업권에 명시된 행위에 제한된다. 즉 허용지역, 허용 광물 등 광업권에 명시된 행위만이 가능하다.

광업권은 또한 가나 회사법(Incorporated Private Partnerships Act 1962(Act 152) 또는 기타 법률에 따라 마련된 법인설립법령(Companies Code of 1963(Act 179))에 따라 설립된 회사에 대해서만 발급된다.¹³⁾

o 광업권 신청절차

광업권 신청--광물위원회--광업부장관에게 권고문 제출--

광업권 신청은 광물위원회(Minerals Commission)에 지정된 양식과 함께 재정 및 기술자원, 소요 예상경비, 상세한 활동계획, 가나인 고용 및 교육 제안서 등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기술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3) 광업법 제10조.

광물위원회는 달리 지체 사유가 없는 한 접수 후 90일 이내에 광업부 장관에게 권고문을 제출하여야 한다.¹⁴⁾

광업부장은 권고문 접수 후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결정사항을 통보하고, 이에는 허가구역, 기간, 대상광물을 상세하게 명시하여야 한다.¹⁵⁾ 장관은 허가결정일로부터 45일 이전에 광업권 신청 사항을 토지 소유자와 관련 지역 의회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통지사항에는 광업권 신청부지의 범위를 기술하여야 하고, 해당 지역의 관습법이 인정하는 방법으로 해당 관청의 관보와 의회에 비치하여야 한다.

광업권 신청자는 승인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수락여부를 광업부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장관은 통보 수령 즉시 광업권을 부여하여야 한다. 승인결정은 통보를 받은 후 60일간 유효하다.

광업권은 동 법에 규정된 바에 따라 개정되는 조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광업권자의 권리와 의무는 광업권자의 대리인 및 피고용인에게도 적용된다.

광업권자는 광물위원회 감사부장(Head of the Inspectorate Division of the Commission)의 서면 동의 없이 채광과정에 취득한 광물을 제거 또는 훼손할 수 없다. 그러나 cores 와 샘플은 시금(assay), 확인 또는 분석을 목적으로 보유할 수 있다. 보유된 core는 감사부장이 지질조사부장(Director of Geological Survey Department)과 협의하여 샘플과 발견 장소 및 위치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도록 상세사항을 보관하여야 한다. 또한 시금, 확인 또는 분석 후 core는 감사부장의 명시적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처분될 수 있다.

○ 광업권의 양도

광업권은 광업부 장관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14) 광업법 제12조.

15) 광업법 제13조.

이전, 양도, 지당, 또는 기타 직권이 설정될 수 없다. 장관은 양도신청 접수 후 30일 이내에 서면 승인결정을 못하는 경우 신청자의 요청에 따라 그 이유를 요청 접수 후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동 법 제27조상의 분쟁해결절차에 회부된다.

○ 광물 추가를 위한 광업권의 변경

광업권자가 광업권 행사 과정에 광업권에 명시되지 아니한 광물을 발견하는 경우 발견 후 30일 이내에 광물위원회와 지질조사부에 발견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통보사항에는 발견사실에 대한 세부내용 및 위치 그리고 정황이 포함되어야 한다.

광업권자는 정해진 양식에 따라 추가 광물을 포함하거나 제외하기 위한 광업권 개정을 신청할 수 있다. 광업부장은 동 법에 따라, 그리고 동 부지에 이미 다른 광업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정해진 조건에 따라 광업권을 개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동일 지역에 다른 광물권이 이미 부여된 경우에는 기존 광업권자에게 통보 및 우선 신청권이 부여된 후 개정이 가능하다. 기존 광업권자에게 통보될 내용에는 신청광물에 대한 상세내용 및 신청지역에 포함되어야 한다.

○ 광업권자의 의무

광업권자는 광업행위를 책임질 수 있는 자격과 경험을 가진 매니저를 상시 고용하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광물위원회 감사부장에게 서면으로 매니저 고용사항과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1996 수자원위원회법(Water Resources Commission Act, Act 552)의 승인 또는 허가를 조건으로 광업활동에 필요한 물 사용권,

광업권자는 광업활동에 착수하기 전에 천연자원과 공중 보건 그리고 환경 보호를 위해 산림위원회(Forestry Commission)와 환경처로부터

필요한 승인 및 허가를 취득하여야 한다. 또한 광물을 채굴하는 경우 동 법과 기타 환경보호 관련법에 따른 법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 기록 보관 및 보고 의무

광업권자는 광물위원회에 통보된 가나내에 사무소에 허가증서에 관한 운영 서류 및 기록을 비치하고 광물위원회 공무원에게 열람 및 복사를 허용하여야 한다. 광업권자는 또한 광물위원회, 지진조사부 그리고 기타 명시된 사람에게 자신 또는 대리인이 취득한 광업활동 및 지질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위 기록, 서류, 또는 정보는 광업권자와 권리승계인이 광업권을 보유하는 한 비밀로 간주되어 광업권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공개되지 않는다. 그러나 일반인이 정해진 비용을 지불하면 검사를 위해 공개될 수 있고 복사를 할 수 있다. 또한 위 정보들은 광업권자가 권리를 보유하는 동안에만 비밀로 유지되고, 이후에는 보호를 받을 수 없다.

또한 비밀정보조차 동 법의 목적상 또는 입법 목적으로 공개가 필요한 경우, 동 법에 따른 기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광물위원회의 자문가나 장관이 비밀정보를 수령받도록 허가한 공무원에게는 공개를 금지할 수 없다. 너무 모호한 규정이다. 또한 위 서류의 저작권은 대중에게 공개된 순간부터 가나정부의 소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¹⁶⁾

3. 로열티, 임대료 및 비용

광업권자는 미리 정해진 바에 따라 연간토지임대료, 광업권 실시료, 로열티 등을 지불하여야 한다. 위 비용은 가나 정부에 대한 부채(debt)로 간주된다.

연간토지임대료는 토지소유자나 승계인 그리고 양수인에게 지불되지 만, stool lands인 경우에는 1994 Office of the Administrator of Stool Lands Act(Act 481)에 따라 동 사무국에 지불된다.

16) 광업법 제21조.

연간광업권실시료는 정해진 바에 따라 광물위원회에 지불되어야 한다.

로열티는 채광권자(mining lease holder)가 부담하는데 채광활동으로부터 취득된 광물에 대해 정해진 바에 따라 정부에 지급된다. 그러나 채광권자가 획득한 총 소득(revenue)의 6%를 초과할 수 없고, 3%이하로 책정될 수도 없다. 순수익의 6%가 아니라 총 소득의 6% 이내이다.

4. 분쟁해결

광업권자와 가나정부 사이에 동 법에 명시적으로 기술된 사항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상호 토의에 따라 해결하고, 쌍방간에 합의하는 경우 원만한 해결을 위해 대체분쟁해결절차에 회부된다.¹⁷⁾

가나 내국인 광업권자와 정부 간의 분쟁해결절차와 외국인광업권자와 정부간의 분쟁해결절차는 달리고 있다. 전자는 1961 중재법(Act 38)이나 기타 발효 중인 법에 따라 해결된다.

외국인 광업권자와 가나 정부 사이에 동 법에 명시적으로 기술된 사항으로서 해결을 위해 회부되어야 하는 분쟁이 분쟁 발생 후 30일 이내에, 또는 쌍방 합의가 있는 경우 이를 초과하여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는 경우 모든 상대방에 통보를 통해 중재에 회부될 수 있다(may). 중재에 회부될 수 있는 방법은 쌍방이 합의하는 바에 따라 투자분쟁해결을 위한 국제 장치에 따라 회부될 수 있다. 위의 방법에 따라 30일 또는 쌍방이 합의한 초과하는 기간동안 합의에 도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먼저 (i) 가나정부와 광업권자의 국적국이 당사국인 양자 또는 다자 투자보장협정에 따라 해결한다. 만약 (i)에 해당하는 협정이 없는 경우 UNCITRAL 중재절차규칙에 따른다.¹⁸⁾

탐사권 부여 계약서는 계약으로 발생하는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17) 광업법 제27조.

18) Id.

광업권자가 서면으로 광업부장관에게 분쟁 회부사실을 통보하는 경우, 광업권 기간은 종료(would expire), 광업권 대상구역은 축소(would be reduced), 또는 당시 광업권에 부여된 권리들은 약화(would be diminished)된다. 그러나 광업권에 부여된 권리가 약화되는 경우에는 기간, 구역, 권리는 경우에 따라 분쟁해결 후 30일 동안 약화되지 않고 지속된다.¹⁹⁾

5. 예비탐사권(reconnaissance license)

o 예비탐사권 부여절차

광업부장관은 광물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예비탐사권 신청자에게 신청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또는 탐사 대상광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예비탐사권을 부여할 수 있다. 최초의 예비탐사기간은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예비탐사부지는 한 개 이상의 블록 또는 5,000블럭을 초과할 수 없다.

o 예비탐사권자의 권한

예비탐사권자나 동 법에 따라 예비탐사권자가 허락한 사람은 예비탐사와 기타 부수적인 활동을 수행할 배타적 권리를 가진다. 예비탐사권자는 허용된 목적을 위한 출입권 및 캠프 또는 임시건물 설립권을 가진다. 그러나 drilling이나 excavation은 할 수 없다.

예비탐사권자가 탐사권을 신청하는 경우, 광업부장관은 예비탐사권자의 의무 이행사항을 검토한 후, 신청 후 60일 이내에 탐사권을 부여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제27조 분쟁해결절차에 회부된다.

19) Id.

6. 탐사권(prospecting license)

o 탐사권자의 권리

탐사는 허가지역 내 매장광물의 양 그리고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 지질학적, geophysical, 지질화학적 조사를 통한 특정 광물의 탐사권을 의미한다. 동 권리의 소유자는 예비탐사권자와는 달리 배타적 권리를 가지고, drilling, excavation, 기타 지하 굴착행위를 수행할 수 있다.

o 탐사권 취득 절차

최초 허가기간은 최대 3년, 최대 탐사허용구역은 750 블록 또는 157.5km²에 한정된다. 그러나 최대 2회에 한하여, 각각 최대 3년의 기간 동안 갱신될 수 있다. 만약 갱신 허용여부가 기한 내에 결정되지 아니 하는 경우 결정시까지 연장된다. 그러나 (갱신하는 경우) 허가권자는 최초 허가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최소 125블록 또는 26.3km² 이상에 대해 탐사권을 가지는 경우, 탐사허가구역 중 1/2이상을 포기하여야 한다.²⁰⁾

탐사권자가 채광권 신청 중 기한이 만료한 경우 결정시까지 연장된다.

탐사권자가 기한 연장이나 채광권 신청을 한 후 탐사권을 양도하는 경우, 동 신청은 양수인의 권리와 의무로 간주된다.

탐사권자는 탐사권이 부여된 토지에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탐사허가 광물을 위한 탐사, 탐사에 필요한 천공(boreholes)이나 굴착, 탐사활동에 필요한 캠프나 임시건물 건립, 기타 부수적인 행위.

o 탐사권자의 의무

20) 이러한 탐사부지 강제감축은 기한이 종료하기 한 달 전 또는 정부기관이 허가증 발급을 지연하였거나 적법한 활동의 수행으로 지연되어 탐사권자의 의무이행이 지연되었다고 탐사권자가 광업부장관을 설득하는 경우 (satisfies)에는 장관이 허용하는 단축된 기간 내에, 탐사권자는 서면으로 광업부장관에게 구제신청을 신청할 수 있고, 광업부장관은 12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의 범위 내에 동 조항 요건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조건으로 면제할 수 있다. 광업법 제38조.

탐사권자는 허가증 발급 후 3달 이내에, 또는 광업부 장관이 지정한 기간에 탐사활동을 개시하여야 한다. 탐사허가 구역의 경계선 확정, 탐사활동프로그램에 따른 탐사활동 수행, 탐사 관련 광물을 발견한 경우 발견 후 30일 이내에 발견사실을 광물위원회를 경유하여 광업부 장관에게 통보, 경제적 가치가 가능한 광물매장을 발견한 경우 발견 후 30일 이내에 발견사실을 광물위원회를 경유하여 광업부 장관에게 통보, 탐사기간 동안 행한 천공이나 굴착을 광물위원회가 만족할 만큼 밀봉 또는 안전조치, 광물위원회가 달리 규정하지(stipulate) 않는 한 허가종료일로부터 60일 이내 캠프나 임시 건물의 철거하고 그리고 철거로 발생한 지표면의 손상을 광물위원회가 만족할 만큼 양호한 상태로 할 것, 탐사권증서에 명시된 조건으로 탐사허가증에 명시된 탐사비용의 지출, 그리고 기타 문서와 보완 문서를 정해진 간격으로 보고할 의무 등 아주 상세한 의무를 부담한다.

○ 미지출 탐사비용의 법적 성격

탐사증서에 지출하기로 명시된 금액이 지출되지 아니한 부분은 부채로 간주된다. 탐사권자는 탐사활동에 대한 기록을 광업부 장관이 만족할 정도로 충분히 그리고 정확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7. 채광권(mining lease)

○ 채광권 취득 요건

채광권은 특정 광물을 채굴, 채광하는 권리를 의미한다. 채광권은 관련 광물이 허가구역에 상업적 수량으로 존재하며 수익성 채광이 가능하다고 광업부 장관에게 입증하는 경우 부여된다. 허가기간은 최대 30년이며 추가적으로 30년 동안 갱신될 수 있다. 허가 구역은 각 중서당 최대 300블락 또는 63km²에 한정된다. 예비탐사나 탐사권자 외의 사람도 광물권의 대상이 아닌 지역에 대해 채광권을 신청할 수 있다.

예비탐사권자와 탐사권자는 정해진 양식에 따라 탐사증서상의 광물 모두에 대해 또는 일부에 대해, 또는 탐사허가 블록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채광권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신청 블록이 세 개 이상의 지역(areas)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채광권 부여조건은 동 법과 적절하게 신청한 것을 조건으로, 신청인이 채광권 보유 및 증서상의 수행 활동에 관한 의무를 실질적으로 준수한 경우, 광업부장관은 신청서 수령 후 60일 이내에 광물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채광권을 부여할 수 있다.

채광권은 다음의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거절할 수 없다: 광업부장관의 우려사항이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전달되고, 신청인이 신청에 대해 또는 채광활동계획에 대해 적절한 보완 기회가 부여되었으나, 광업부장관이 허용하는 합리적인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은 경우; 광업부장관이 신청인의 이행지체에 대해 통지를 하지 아니 하여 신청인이 통지서에 명시된 기간 내에 이행지체를 치유하지 못한 경우.

○ 채광권에 대한 정부의 참가

채광권 또는 채굴권이 부여되는 경우, 가나 정부는 채광활동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10%의 무상 권리를 취득하고, 채광활동에 대한 금전적 기여는 부담하지 아니한다. 정부는 또한 채광권자와 합의하는 경우 채광활동에 추가적으로 참가할 수 있다.

○ 채광권의 갱신

채광권자는 채광권 종료 3개월 이전 언제든지 또는 광업부장관이 허용하는 단축된 기간 내에 허가지역 전부 또는 일부, 또는 허가광물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최대 30년까지 채광권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채광권자가 적절하게 신청하고, 그리고 관련 의무를 실질적으로 (materially) 준수한 경우 광업부장관은 서면으로 명시된 조건으로 연장을 허용하여야 한다. 신청인이 연장신청 기간 중 채광권이 종료한 경우 채광권은 신청허가 여부 결정일까지 유효하다.

○ 채광권자의 권리

채광권자는 채광증서에 명시된 광물을 채광하기 위해 제한 없이 채광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채광활동 중 취득한 광물을 채광, 수송, 드레싱, 처리, smelting 또는 정련을 목적으로 장비 및 시설 그리고 건물을 설립할 수 있다. 광물을 수거하여 승인된 판매계획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 채광권자가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에 승인된 바에 따라 광물 또는 폐부산물물을 비축 또는 덩핑할 수 있다. 기타 부수적인 활동을 할 수 있다.

○ 광물권의 통합 및 확대

인접한 복수의 블록에 대한 광업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효과적이고 경제적 관리를 위해 광업부장관에게 광업권 통합을 신청할 수 있다. 광업부장관은 광업권이 부여된 구역과 인접한 블록을 추가할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허가지역 확대를 승인할 수 있다.

○ 안정화 계약(stability agreement)

광업부장관은 광업권자의 권리가 새로운 법률, 명령, 기타 조치로 침해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합의한 날로부터 15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안정화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안정화계약의 대상에는 채광활동에 필요한 수입자료, 상품, 장비 그리고 기타 생산물품에 대한 관세 또는 기타 세금, 로얄티, 세금, 수수료 그리고 기타 재정적 수입조치, 그리고 환전통제와 자본금 송금 및 배당금 송금에 관한 법률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안정화계약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개발계약(development agreement)

예상투자금액이 US\$5억불 이상인 경우 채광권에 부수하여 개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발계약에는 채광권에 따른 광업권 및 활동, 광업부장관이 재량권을 행사할 상황 및 방법, 제48조상의 안정화 조건, 환경보호, 분쟁해결 조항 등이 포함될 수 있다. 개발계약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생산의 정지(suspension of production)

채광권자가 광물생산을 정지하고자 하는 경우 3개월 전에 광업부장관에게 통지하고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시장상황 악화 등을 포함한 채광권자의 통제를 벗어난 이유로 생산을 중지하는 경우 14일 이내에 광업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생산정지 통보나 그 사실을 인지한 광업부장관은 채광허가증에 명시된 조건 하에 생산정지를 승인하거나 정해진 기간까지 완전한 생산재개를 명령할 수 있다.

생산의 정지기간은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나 광업부장관에게 12개월의 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그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8. 광업권의 포기, 정지 및 취소(제67조)

○ 광업권의 포기

광업권자가 광업권상의 토지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 희망일로부터 2개월 전에 광업부장관에게 포기증서를 신청하여야 한다. 동 신청절차는 해당 법률에 따른다.

다음의 경우 포기증서는 발급되지 아니한다:

- 신청자의 이해지체;
- 광업활동에 대한 기록 및 보고서 미제출
- 포기를 희망하는 토지의 안전상태나 채광행태가 광업부장관이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 포기 후 잔여구역이 1 블록 이상인 경우

광업권 대상 토지의 일부만이 포기되는 경우 광업부장관은 허가증을 재발급하고, 전체토지에 대한 포기인 경우 광업권을 취소할 수 있다. 광업권 포기증서의 효력은 발급일이다.

○ 광업권의 정지 및 취소

다음의 경우 광업부장관은 광물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광업권을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 광업권자가 정부의 과실유무를 불문하고 대금지급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인수합병 등의 사유가 아닌 파산 또는 청산되어 채권자와 약정계약을 체결하거나 채무자를 위해 법률을 악용하거나 또는 liquidation된 경우
- 광업부장관에게 광업권에 대한 보고가 허위사실이라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 광업권 신청자격이 없는 경우(구체적 이유 없음)

광업부장관은 위의 사유로 광업권을 정지 또는 취소하기 전, 광업권자에게 통지를 하고 합리적인 기간 내에 이를 치유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합리적인 기간은 채광권의 경우 120일, 다른 광업권의 경우에는 60일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하자가 치유될 수 없어 정지나 취소가 채택되어서는 아니 되는 그 사유를 광업부장관이 만족할 수준으로 제시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 채광권의 정지 및 취소

채광권자가 타당한 이유 없이 2년 이상 광업활동계획의 일부분(any)이나 실질적(material)부분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광물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채광권을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광업부장관은 채광권을 정지 또는 취소하기 전, 채광권자에게 통지를 하고 120일 이상의 합리적인 기간 내에 이를 치유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또한 하자가 치유될 수 없어 정지나 취소가 채택되어서는 아니 되는 그 사유를 광업부장관이 만족할 수준으로 제시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 광업시설의 처분

이유를 불문하고 광업권이 종료하면 광업권 대상 토지로 적법하게 설립되거나 반입된 광산시설에 대해 권리를 가지는 자는 광업권 종료 후 6개월 이내 또는 광업부장관이 허용한 추가적인 기간 내에 철거를 하여야 한다. 단 동 시설이 광업권자나 다른 권리자가 가나 내의 다른

광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광업권 종료 후 광업부장관의 철폐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철폐되지 아니 한 광업시설은 가나정부에 귀속된다. 그러나 동일 부지에 새로운 광업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철폐통보를 할 수 없다.

○ 광업권 종료 후 관련 문서의 제출

광업권 종료 후 광업권자가 의무적으로 보관한 문서, 광업권 대상 부지의 개발계획도 및 지도, 기타 광업권 관련 기타 문서(전자문서 포함)는 제출되어야 한다. 제출 통보 후 30일 이내에 이행하지 않는 경우 US10,000불 이하의 약식재판이나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모두에 해당될 수 있다.

9. 처벌조항: 제106조

다음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US5,000달러 이하의 벌금 또는 계속하여 위반하는 경우 1일 US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 동 법을 위반하며 예비탐사, 탐사 또는 채광한 경우
- 광업권 또는 갱신 신청 시 거짓 또는 현혹하는 내용을 실질적으로 상세하게 인식하여 진술한 경우
- 제출 서류에 실질적으로 상세하게 거짓 또는 현혹하는 내용을 인식하여 기재한 경우
- 동 법을 위반하여 광물을 철폐 또는 처분하거나, 동 법을 위반하는 방법으로 건축물이나 부착 기계류 또는 기타 동산을 철폐한 경우
- 광물의 발견 장소를 현혹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저장하거나 이를 유발한 경우
- 기만(cheat, deceive, or defraud)할 목적으로 광석의 가치를 제고하는 물질을 샘플이나 광석에 섞거나 광석의 성질을 바꾸는 경우
- 거짓 또는 기만하는 채광행위입을 인식하여 행한 경우²¹⁾

21) Being engaged in the business of milling, leaching, sampling, concentrating, reducing, assaying, transporting or dealing in ores, metals or minerals, keeps or uses a false or fraudulent scales or weights for weighing the ores, metals or minerals, or uses a false or fraudulent assay scales or weights or enriched fluxes used for ascertaining the assay value of minerals, knowing them to be

- 적법한 지시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동 법상의 감독 공무원에게 협조하지 않은 경우
- 감독 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 동 법이나 시행령을 위반한 경우

III. 광업 분야 우대 정책

○ 탐사비용 자본비용 계상

채광권자는, 상업적 발견 자원에 대해 개발을 시작하는 경우, 광물위원회에 따라 광업부장관이 승인한 예비탐사와 본탐사에 지출된 비용에 대해 자본비용(capitalization)으로 계상할 권리를 가진다.²²⁾

○ 광산 장비에 대한 수입 관세 면제

광업권자가 광업 활동(mineral operation)²³⁾을 위해 특별히 그리고 배타적으로 수입한 설비, 기계류, 장비 및 부속품에 대해 수입관세 면제를 받는다.

- 추가로 표준 광업회사의 경우, 광업위원회를 통해 관세 부서와 소비세 관리부서가 승인을 거쳐 광산 장비에 대한 국내 소비세까지 면제한다.

○ 자본금 세금 공제

- 광업권자는 자본 비용에 대해, 첫 해 50%까지 세금을 공제받는다. 탐사 및 탐광 기간 중의 비용 지출은 자본 비용으로 계상된다.
- 추가적으로, 모든 투자비용의 5%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 손실 보전

- 손해년도의 손실분이 자본 비용 공제를 초과하지 않도록 다음 연도의 이익과 상쇄할 수 있다.

false or fraudulent

22) 광업법 제28조.

23) "Mineral operations" means reconnaissance, prospecting or mining for or of minerals.

- 광산부지에 제공된 숙박시설에 대한 소득세 면제, 직원의 임국 쿼터, 개인 송금 쿼터에 대한 면세 등의 혜택을 받는다.
- 외국인 고용세 면제
 - 광업의 경우, 선택적인 외국인 고용세 면제 혜택을 부여한다.
- 인지세 유예
 - 경제기획부 장관은 광업부 장관의 문의를 통해 전체 또는 부분적인 등록 인지세를 5년까지 연기할 수 있다.
- 로열티 유예
 - 국가의 이익에 부합될 경우, 광업 로열티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유예할 수 있다.
 - 분석, 시금용 광물에 대한 로열티를 면제할 수 있다.
- 자본의 송금

채광권자는 채광활동으로 발생한 외국환 소득의 일부를 예비 부속품이나 채광활동에 필요한 기타 생산용품(inputs)을 구입하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가나중앙은행의 허가하에 자신의 계좌에 보유할 수 있다(may). 그러나 이 외국환 소득이 없으면 부속품이나 생산용품의 구입이 달리 용이하지 않은 경우라는 단서가 붙어 있다.

채광권자는 채광활동으로 발생한 순소득이 외국환인 경우 25%이상의 외국환을 계좌에 보유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금액은 예비 부품, 설비, 원재료, 기계류 및 장비 취득을 위해, 부채 상환과 배당금 지불, 출국 고용인의 송금, 채광활동의 매개 또는 청산 시 자본 송금 등의 목적이라는 단서가 붙어 있다. 또는 광물위원회의 조언에 따라 광업부 장관이 재정부 장관과 협의한 후 재정부 장관이 허용할 수 있다는 절차적 제한을 받고 있다. 나아가 위 계좌는 가나중앙은행장의 동의하에 채광권자가 선임한 수탁인에 의해 신탁으로 보관되어야 한다.

채광권자는 가나중앙은행을 통해, 또는 위에 개설된 순수 외환 보유
자에 대해서는 자유로운 환전권을 보장받는다.